

# 서경방송 서비스 이용약관

2023. 10

(주) 서경방송

## 목 차

- 1. 개요**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방송 상품의 구성
- 2. 계약의 성립**  
제4조 계약의 체결  
제5조 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제7조 이용시설의 설치 전 임의 해제  
제8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제9조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3. 요금 청구 및 납부**  
제10조 요금청구 및 납부  
제11조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4. 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  
제12조 사업자의 의무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 5.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제14조 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제15조 서비스의 이용 중단
- 6. 계약의 변경 및 양도**  
제16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17조 서비스의 이용휴지  
제18조 이용계약의 양도
- 7. 기타사항**  
제19조 의무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제20조 결합상품  
제21조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제22조 청소년 보호장치  
제23조 손해배상 및 면책  
제24조 약관의 개정 및 기타
- 8. 부 칙**

## 별 표

- [별표 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 [별표 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 상품 구성표
- [별표 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 알뜰형)
- [별표 4] 디지털 알뜰형 케이블TV 채널 상품 구성표
- [별표 5] 디지털 케이블TV 요금표
- [별표 6] 디지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 [별표 7] 방송요금 할인
- [별표 8] 상품별 이용요금표
- [별표 9] 할인반환금 및 변상금
- [별표 10] 디지털 복지형 상품
- [별표 11] 구비서류
- [별표 12] 신규 및 전환 가입 제한 서비스

##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 1. 개요

#### 제1조 (목적)

- ① 본 약관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서경방송 (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이하 "이용자") 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② 본 약관은 지정된 홈페이지([www.iscs.co.kr](http://www.iscs.co.kr))에 게시하며 변경 사항을 공지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방송상품"이라 함은 이용자가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채널별 또는 패키지 등 단위별로 사업자가 구성하여 제공하는 모든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아날로그 방송상품"라 함은 이용자에게 사업자가 보내는 아날로그 방송신호를 아날로그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③ "디지털 방송상품"이라 함은 사업자가 보내는 디지털 방송 신호를 셋톱박스 등을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패키지 방송상품"이라 함은 채널의 특성, 이용자의 기호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여러 개의 채널 및 서비스 등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⑤ "아날로그 의무형 상품"라 함은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의 패키지로 방송법상 의무 송신 채널 등으로 구성된 최소 단위의 아날로그 케이블TV 패키지를 말합니다.  
⑥ "디지털 기본형 상품"이라 함은 유료채널을 제외하고 사업자가 디지털에서 송출하는 모든 채널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상품을 말합니다.  
⑦ "유료채널" 및 "UHD 채널"이라 함은 이용자가 채널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채널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⑧ "오디오 상품(음악방송)"라 함은 라디오 방송 수 개의 채널을 묶어서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 Video On Demand)"라 함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원하는 시간에 제공해주는 서비스(오디오 포함)를 말합니다.  
1.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별도의 패키지로 구성하고 월정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묶어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패키지를 말합니다.  
3. "편당구매(PPV : Pay Per View)"라 함은 이용자가 개별 콘텐츠 단위로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용 편당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편당구매 이용권(PPV 이용권)"이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 이용활성화를 위해 발행된 이용권을 말합니다.  
5. "일 단위 구매(PPD : Pay Per Day)"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콘텐츠를 정해진 시간(1일) 내에 이용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무료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FOD : Free On Demand)"라 함은 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는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서비스를 말합니다.  
7. "VOD&채널 패키지"라 함은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와 채널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는 VOD, 채널 동시 이용 패키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⑩ "데이터 방송(Data Broadcasting)"이라 함은 각종 데이터를 중심으로 음성, 영상 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독립적 또는 프로그램과 연동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TV를 통해 제공 가능한 출뱅킹,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와 같은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⑪ "이용시설"이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주거시설, 영업장,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선로설비, 셋톱박스 등 이용자설비를 말합니다.  
⑫ "셋톱박스(컨버터)"라 함은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내전선으로 설비의 단말에 설치하는 채널선택, 암호 해독 기능을 내장한 장치를 말합니다.  
⑬ "케이블 카드(Cable Card)"라 함은 이용료를 납부하는 이용자만이 방송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도록 제한수신기능을 수행하는 카드 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⑭ "스마트 카드(Smart Card)"라 함은 셋톱박스에 장착하여 보안, 이용자 인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카드형태의 부품을 말합니다.  
⑮ "방송 구역"이라 함은 방송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사업자가 종합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역을 말합니다.  
⑯ "복수 이용자"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또는 가구) 내에서 2대 이상의 이용시설(하나 또는 복수의 건축물에 자체 방송설비와 연결하여 종합유선방송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약정한 TV수상기 대수를 기준으로 함)을 설치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⑰ "공동주택"이라 함은 여타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을 내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말합니다.  
⑱ "단체수신계약"이라 함은 사업자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회의가 입주자들에게 같은 조건으로 제공할 방송 상품의 패키지, 요금, 방송수신설비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주체의 명의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명의로 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사업자의 이용약관에서 정한 계약은 단체계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⑲ "일시 이용 정지"라 함은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일정 기간 서비스 정지를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⑳ "이용 중단"이라 함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업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⑳ "이용 휴식"라 함은 이용 불가 지역으로의 설치 변경 또는 기술상의 사유 등으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㉑ "이전 설치비"라 함은 이용자가 방송 구역 내에서의 전입,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㉒ "재연결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 및 이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이용 중단 상태인 이용시설을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  
㉓ "액내 이전비"라 함은 이용자의 요청으로 이용자 액내에 설치되어 있는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행해지는 작업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반 경비를 말합니다.  
㉔ "유료 출장 서비스"이라 함은 셋톱박스 등을 판매할 경우 보증 기간 이후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와 셋톱 박스 등을 임대할 경우 명백한 소비자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 액내에 A/S직원이 출장하여 서비스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㉕ "디지털복지형"이라 함은 셋톱박스 없이 저소득층 보급형 디지털TV 수상기만으로 디지털 케이블 방송 시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⑦ "디지털알뜰형"이라 함은 사업자가 8VSB로 변조된 방송 신호를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에 제공하는 고화질 방송 서비스 상품을 말합니다.

### 제3조(방송 상품의 구성)

- ①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 상품에 대한 상세 내역은 [별표 1,2,3,4,5]와 같습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의 기호를 충분히 고려하여 가격 및 채널의 다양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방송 상품을 구성해야 합니다.  
③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 시행령 제 61조 1항에 규정된 동시에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④ "디지털 기본형 패키지"에는 방송법 제78조·동법시행령 제61조 1항에 규정된 동시에송신채널, 동법 제70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한 지역채널 및 동법 제70조 제3항·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공공채널이 포함됩니다.  
⑤ "패키지"는 채널 특성 및 이용자 기호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채널상품을 아날로그 의무형 패키지와 디지털 패키지를 포함하여 3개 이상 구성, 판매해야 합니다.  
⑥ 사업자는 특정 종교를 가진 이용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용자보다 채널상품을 선택하는데 불리하도록 채널을 구성해서는 안 됩니다.  
⑦ "디지털 알뜰형" 상품은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수 및 요금을 유지하여 구성하며, 아날로그 케이블TV의 상품별 채널이 변경될 경우 디지털 알뜰형 상품에도 채널 변경 내역을 적용하여 구성합니다.

### 2. 계약의 성립

#### 제4조(계약의 체결)

- ①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성립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요금, 위약금, 채널묶음 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 보호장치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② 종합유선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해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계약 처리 후 반드시 본인에게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이메일, 문자 등의 방법으로 재통보 해야 합니다.  
④ 대리 신청의 경우는 고객 본인의 위임장 등 고객 본인의 가입사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을 정약 원료로 됩니다.  
⑤ 단체계약 체결시에는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명으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⑥ 사업자는 판촉활동 등을 위해 제공한 무료서비스 제공기간 만료 후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료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 종료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유료전환 여부에 대한 사항을 전화, 이메일 또는 문자서비스(SMS)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무료서비스가 유료약정에 따른 것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⑦ 사업자는 이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승낙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용 승낙을 재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전송망 설비, 이용 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단 또는 비용이 요구될 경우  
3.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사업자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으며, 승낙 후에도 가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명의로 신청하거나 하위 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하는 경우  
3.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이용 신청  
4. 보호자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의 가입 신청  
⑨ 이용 희망자가 이용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가입 고객 본인에게 방송 서비스 상품, 이용료, 시설 설치비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⑩ 사업자는 이용 신청 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이용자의 주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 설치 예정일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⑪ 이용 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종합유선방송 이용 약관"과 아날로그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1] "아날로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2] "아날로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 (아날로그케이블 방송)"을, 디지털 케이블 TV 이용자에게는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알뜰형)"과 [별표4] "디지털 알뜰형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와 [별표5]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표"와 [별표6] "디지털 케이블 TV 채널 상품 구성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한 후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사업자 및 이용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  
2. 요금(설치비, 이용료, 셋톱박스 보증금 및 사용료 등 포함) 및 납입 방법  
3. 이용 시설 설치 전 임의 해제  
4. 계약의 해지 및 할인액 반환금  
5. 이용자 변경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⑫ 기존 아날로그 케이블 TV 이용자가 디지털 케이블 TV로 전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서면 혹은 구두로 신청서 접수, 온라인의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게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디지털 방송 이용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합니다.

#### 제5조(단체수신계약의 체결 등)

- ① 단체 계약 체결시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각 세대별 가입동의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② 단체계약 상품은 본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상품 중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상품명·요금 등은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③ 단체계약 체결시 및 체결 이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별 세대에게 단체계약의 주요내용을 우편 또는 게시판 고지 등 서면의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이 때, 주요 고지 내용에는 단체계약 상품명·요금, 가입기간, 해지 절차 및 종료해지시 할인액·반환금, 해자A/S 등 관련 문의처, 기타 고지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④ 단체계약 가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 또는 방송사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입주자 대표회의 등"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방송사는 단체계약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할인액·반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이전)

- ①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 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이용 시설의 설치를 위해 자기소유 또는 점유물인 가옥, 부지, 구조물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용자가 세입자이거나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책임 하에 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대인 또는 다른 공동주택 거주자와 협의하는 등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시설의 설치, 점검, 수리 및 관리서비스를 위해 이용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증표를 휴대하여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 ⑤ 이용시설 중 셋톱박스는 사업자에 대여할 수 있으며, 셋톱박스를 대여 받은 이용자는 셋톱박스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⑥ 사업자는 거주한 셋톱박스는 이용계약 해지 시 즉시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용자가 납입한 보증금과 이용료 및 셋톱박스 사용료를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을 직접 구매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⑦ 이용자는 셋톱박스 등이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준의 셋톱박스 등을 사업자에게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⑧ 이용자는 거주지 변경 등을 사유로 동일한 방송구역 내에서 이용시설의 이전을 사업자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사업자는 전송망 설비, 이용시설의 설치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설치 기한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제7조(이용시설의 설치 전 일의 해제)

이용자는 이용시설 설치 이전에는 언제든지 이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미 납입된 시설 설치비와 셋톱박스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 제8조(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관리 및 반환)

- ①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소유권은 사업자에 있으므로 이용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 분실, 도난 발생시 이용자는 즉시 사업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② 사업자는 설치 예정 일자에 방송수신설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설치 예정일 전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추후 변경된 설치 예정일을 이용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③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의 훼손이나 변경조작 시도 등을 암시적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할 시는 서비스 이용이 중단됩니다.
- ④ 이용자는 케이블 카드와 스마트 카드가 고장, 훼손되어 교체하는 경우 기준 사용 스마트 카드를 반납해야 하고,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훼손 및 분실의 경우 [별표3]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처리 후 사업자가 공지하는 일정기간 내내에 케이블 카드 및 스마트카드를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제9조(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 서비스 이용 및 해지 등)

- ① 월 단위 구매(PPM : Pay Per Month) 서비스는 가입 후 이용자가 전화를 통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 요금이 부과되며, 당해월에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해당 가입월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② 시리즈 단위 구매(PPS : Pay Per Series) 서비스와 편당 구매(PPV : Pay Per View) 서비스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구매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③ 실제 프로그램이 가이드 채널 등에 고지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 이용자가 구매 취소(의의를 제기)를 요구한 때에는 당해 상품요금(월요금, 시리즈 요금, 해당 콘텐츠 요금 등)을 면제합니다.
  - ④ 유료 데이터방송 이용 중 송출 사업자의 망 장애 등과 같은 이유로 이용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지며, 콘텐츠 오류,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전송장 장애 등과 같이 데이터 방송사업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서비스 이용장애는 데이터 방송 서비스 제공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단, 사업자는 데이터방송서비스 제공 업자를 성실히 관리 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⑤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의 이용요금은 [별표3]에 따릅니다.

#### 3. 요금청구 및 납부

##### 제10조(요금청구 및 납부)

- ① 이용자는 지로, 계좌이체, 자동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의 이용요금 납부방법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 월에 발생한 이용료를 산정하여 서비스 이용 익월에 청구합니다.
- ② 사업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전체 할인액과 개별 서비스별 할인액, 기타 할인액(약정 할인등)을 구별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이용요금을 청구합니다.
- ③ 사업자 시설 하자 등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업자는 당월의 월 이용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이용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이용료에서 감액해야 하며, 특히 연속 5일 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이용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이용료를 면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되, 이용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현재지변으로 인한 방송 이용 불가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④ 사업자는 월 이용료 납입청구서를 납부기일 7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도달하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포함한 납입 청구서의 통지 방법은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기타 방법에 의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자는 월 이용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 요금 납부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후로 정합니다.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은 체납 기간의 총 월 이용료의 2/100 이내로 합니다.
- ⑥ 이용자는 납입 청구된 월 이용료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입 청구서 수령일로부터 1개월 이내 또는 과오납 사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이의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 접수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과오납된 금액은 즉시 환급해야 합니다. 단, 이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월 이용료에서 차감 처리합니다.
- ⑦ 사업자는 이전 거주자의 미납 요금에 대해 새 거주자에게 전가하거나 이를 이유로 기입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사업자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물로 이사하여 이전 사업자 서비스를 해지하고 신규

가입한 경우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에 이를 때 까지 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1]과 같습니다.

-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요금할인 중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해지로 발생한 할인반환금과 이전 사업자에 납부한 할인반환금 간 상계처리하고 이전 사업자에게 납부한 할인반환금이 남아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③ 사업자는 요금을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고, 요금의 할인 대상, 할인율 및 할인액 반환금 등을 [별표 7], [별표 8], [별표 9]와 같습니다.
- ④ 할인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편, 팩스 등 사업자가 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이를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접수한 시점의 의월부터 할인 또는 감면합니다.
- ⑤ 요금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자는 할인 또는 감면 대상 자격이 변경된 경우 즉시 사업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가 요금의 할인 또는 감면 대상임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아 요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사업자가 이미 청구한 요금에 대해서는 감면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⑦ 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이상 이용계약을 유지할 것을约定한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 등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 4. 사업자와 이용자의 역할

##### 제12조(사업자의 의무)

- ① 사업자는 방송 구역 내에서 이용자에게 별표에 정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사업자는 이용자가 특정 퍼키지를 이용하는 것을 이유로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단,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유료채널,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서비스는 디지털 퍼미션 서비스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 개편을 매년 1회 시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합니다.
  1. 기본형상품의 뮤비상품 중 어느 하나의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 중 10% 이상의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의 채널번호를 변경(종료채널과 고가요금제로 변경되는 동일번호 채널을 포함)하는 경우
  2. 전체 운용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유료 실시간 텔레비전 방송채널과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은 제외)의 5% 이상의 채널번호를 변경하는 경우
- ④ 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채널 및 퍼키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콘텐츠사가 부도, 폐업, 방송송출 종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콘텐츠 공급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2. 기존에 제공하는 상품 내용에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 되거나 서비스품질이 개선되는 경우
  3. 서비스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4. 계약의 종료 후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경우
  5. 회사와 콘텐츠사의 합의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 (채널번호변경 포함)되는 경우
  6. 할리적인 방법의 채널평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채널을 종료한 경우
  7.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부의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이용약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⑤ 사업자는 약관 별표에 명시된 요금의 변경시, 30일전에 요금 인상 사유와 내역을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 ⑥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지희망일 이후에 해지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 희망일에 해지된 것으로 하여 이용료를 정산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당하게 요금을 수령한 경우 부당 수령일 경과일수에 따라 부당수령액과 부당수령액에 대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이용자에게 반환합니다.
- ⑦ 사업자는 위의 ③, ④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채널 퍼미션 변경 및 이용요금 인상시에는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⑧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제공할 의무를집니다. 단,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와 법령에 의하여 일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라도 그 사유를 수신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합니다.
- ⑨ 사업자는 수신자에게 수신의 장애가 있을 경우 자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
- ⑩ 사업자는 이용자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불만처리 일정을 통보해야 합니다.
- ⑪ 사업자는 이용 설비의 설치, 변경, 유지 또는 보수 등의 업무 수행 중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⑫ 사업자는 수신자가 셋톱박스 전원을 켰을 때 지역채널이 처음으로 수신되도록 송출해야 합니다.
- ⑬ 사업자는 디지털방송의 셋톱박스 기능에 '서비스 연령 제한'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안내서에 사용방법을 명기해야 합니다.
- ⑭ 사업자는 결합상품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용증인 결합상품에 다른 개별 서비스 상품을 추가하는 행위로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⑮ 사업자는 결합상품 관련 분쟁 발생시,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⑯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회수하여 재출고하는 단말의 경우 자체관리규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성능 적합 검사를 이행 후 제공합니다.
- ⑰ 회사는 제공 중인 상품의 채널 및 퍼미션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단,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다음날부터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수신권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채널 및 퍼미션을 변경하는 경우, 고객이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고객이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합니다.
- ⑱ 사업자는 디지털알뜰형상품의 데이터홀드 채널 송출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송출 시작일 이전 계약 가입자에 한하여 [별표9]에 따른 할인반환금(결합 상품 시 각 서비스별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를 제공합니다.

#### 제13조(이용자의 의무)

-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이용료와 이용 시설 설치비, 셋톱박스의 보증금 및 사용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단, 이용료에는 한국 방송공사의 시청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용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 시설을 보존 관리하는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셋톱박스 불량 단자 시설 접촉 불량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이용 시설을 임의로 해체, 수리, 이전 또는 타 기기와 접촉해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고장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사업자의 승인 없이 추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이용 시설을 증설하여 추가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한 때에는 추가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임의증설 대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사업자에게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이의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1. 이용 신청자의 명의, 주소, 전화번호, 요금청구지 주소변경
  2. 각 채널 상품의 가입, 해지 또는 일시 중지
  3. 요금 납입 방법의 변경
  6. 이용자가 전 환의 통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월 이용료의 연체 등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5. 서비스 이용 중지 및 해지

### 제14조(서비스의 일시 이용정지)

- ① 이용자는 장기 해외 출장, 입원 등 본인의 사유에 의해 서비스 이용을 일시 이용정지 하고자 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일시 이용 정지 개시 5일 이전에 그 기간을 정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최대 기간이 넘도록 이용자의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사업자는 자동적으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단, 서비스 일시 정지 기간은 1년 내 총 90일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 ②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간 동안에는 월 이용료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단, 셋톱박스 사용료는 성적상으로 부과됩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의 일시 이용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설치한 이용 시설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④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용이 가능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연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자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일시 이용 정지 기한 초과 후 이용자가 재연결 신청 없이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는 일시 이용 정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이용자에게 월 이용료를 부과합니다.
- ⑥ 이용자가 신청한 일시 이용정지 기한까지 이용정지 기간의 연장 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사업자는 일시 이용정지 기한일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⑦ 이용시설을 철거한 이용자가 일시정지 해소 일자를 30일 이상 경과하도록 재개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으로 사업자는 직권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서비스의 이용 중단)

- ① 아래 각호의 경우에 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관계 법령이나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자의 이용요금 등 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최초 청구에 의하여 부과된 납기일 이후 2개월 이상 이용요금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 2)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용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기간을 이용자에게 전화, 우편, 온라인, 방송 등으로 도달 기준 7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자 측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와 긴급하게 이용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③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이용 정지를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용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 ④ 사업자는 이용정지 기간 중에 사유가 해소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 6. 계약의 변경 및 양도

### 제16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사업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 및 변경될 경우, 요금고지서, 전화, 이메일 혹은 문자 등의 방법으로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통보합니다.
- ② 사업자는 정기 계약 만료시점 전까지 이용고객 등의 후 계약을 연장하며, 이용고객이 새로운 계약의 체결이나 해지 신청이 없는 경우, 계약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됩니다. 단, 자동 연장된 계약기간 중에는 최초 계약기간의 할인 요금이 적용되며, 자동 연장 기간 중 해지 시 위약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③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서면, 구두, 혹은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해지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또는 해지희망일까지 해지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늦어도 해지통고 접수후 7일 이내에 해지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단, 고객의 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④ 사업자는 해지신청 접수 및 해지완료 후 문자메시지(SMS),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 ⑤ 사업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시에는 그 사유, 해지일시, 셋톱박스 보증금, 월 요금의 상환액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이용계약서의 기재 사항 중 중요내용을 고의로 허위작성 하여 이를 수정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용료 추가 납부 없이 이용시설을 임의로 증설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를 해체할 것을 2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최고하였으나 이용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이용료를 청탁하여 납입독촉장을 받고 2개월 이상 청탁한 때
  4.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내용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용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재납된 월 요금을 셋톱박스 보증금에서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⑦ 이용자가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할인해준 금액을 별표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자는 해지 전 결합상품 할인율을 계속해서 나머지 서비스에 제공합니다.
- ⑨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하고 잔여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결합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는 최적의 결합상품을 제공하고 변경된 결합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잔여서비스의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기간이 유효한 것으로 합니다.
- ⑩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결합상품 이용자가 일부 서비스를

해지 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단말기 등의 물품을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반환 이후 시점의 단말기(MTA, VCOM, WIFI, DECT, 모뎀, 셋탑 등) 할부금, 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제17조(서비스의 이용제한)

- ① 방송상품의 이용시간은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사업자는 방송상품 유형별로 이용가능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아래 각호의 이용 허용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리 방송 또는 사업자가 정한 홈페이지(<http://www.iscs.co.kr>)에 그 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정기 점검
  2. 이용자 데이터베이스 간접화를 위한 정기 점검
  3.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상황 발생
  4. 사업자와 이용자간 합의한 경우
- ③ 사업자는 이용허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용허자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제18조(이용 계약의 양도)

- ① 이용자는 이용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사전에 서면, 구두 혹은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 변경사항
  2.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주소
  3. 요금납입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책임자 정보
- ② 이용자의 지위 승계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자 및 지위승계자에게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자가 셋톱박스 등 장비를 임대한 경우 장비임대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은 자동으로 지위 승계됩니다.
- ③ 사업자와 양수인과의 이용계약은 제4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7. 기타사항

### 제19조 (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 ① 이용자 할인, 셋톱박스 임대료 및 설치비용의 지원(또는 할인판매) 조건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의무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임의의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별표에 의거하여 지원된 이용비율과 할인혜택에 준하는 위약금을 부과합니다.
- ② 의무가입기간 중 무료서비스 이용, 일시이용 정지, 이용 중단의 경우, 그 기간만큼 의무기간은 연장됩니다.
- ③ 사업자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제1항에서 정한 이용자의 위약금 지불 의무를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 지역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단, 이민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월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장애(1시간 이상)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4. 사업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했음을 확인하는 별도의 확인란에 서명(또는 녹취)을 받지 않은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지불 의무 면제
  5. 결합상품의 해지 대상 서비스가 최저 속도(품질) 보장 제도의 기준에 미달한 경우, 결합할인에 대한 할인액반환금

### 지불 의무 면제

6. 군입대로 인하여 약정 기간내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적용
7. 서비스 이용계약 시 이용자에게 할인액반환금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요금승인을 받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경우
9.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유로 채널 공급을 중단하거나 패키지를 변경한 경우
10. 기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사업자는 할인반환금의 과, 오남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 ⑤ 이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할인 반환금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별표11]구비서류에 기재된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할인 반환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1. 건물주 반대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단, '22년 4월 이후 설치 요청에 대한 반대 사유가 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할인반환금의 100%를 감면)
  2. 해외 이민으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3. 이전 설치를 요청한 건물이나 현재 거주하는 건물이 특정 1개 사업자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하여 사업자의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단, '22년 4월 이후 이전 설치를 요청한 경우는 할인 반환금의 100%를 감면)
-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용자는 할인반환금 지급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유로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채널 및 패키지 변경됨을 고지받고, 이용자가 구체적·개별적으로 고지받은 시점(회사가 고지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 하면 고지가 고지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채널 및 패키지 변경을 이유로 해지할 경우

### 제20조(결합상품)

- ① 결합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본 약관과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약관 및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함께 적용합니다.
- ② 결합상품의 개시는 이용자의 이용 청약에 대하여 사업자의 승낙이 있는 때로 합니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개통이 필요한 경우는 개통이 완료된 때로 합니다.
- ③ 결합상품에 대한 결합 할인은 [별표 8]과 같이 제공합니다.
- ④ 이용자는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는 경우 결합상품 기간 동안 제공 받은 결합 할인 및 혜택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⑤ 할인액 반환금 기준은 [별표 9]에 따릅니다.

### 제21조(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① (주)서경방송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통신 비밀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 ②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수립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홈페이지([www.iscs.co.kr](http://www.iscs.co.kr))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관련 법률 및 지침의 변경 또는 회사 내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취급방침이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제22조(청소년 보호장치)

- ①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아래의 기능을 포함하는 청소년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1. 비밀번호 설정 :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19세 이상 이용 가능 콘텐츠의 자녀 접근 제한 기능
  2. 시청연령 제한 : 방송법 기준상 연령별 시청제한 콘텐츠에 대한 시청제한 기능. 7세, 12세, 15세, 19세 각 연령별 시청제한 설정 시 해당연령 제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기능
  3. 시청시간 제한 : 특정 시간 이상 방송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시청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
- ② 사업자는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청소년 보호장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③ 사업자가 기술적으로 부득이하게 제한조치를 할 수 경우에 한해서는 제1항과 같은 보호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제23조(손해배상 및 면책)

- ① 회사는 회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안 경우는 회사가 알게 된 때)로부터 3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배상합니다.
- ② 이용자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 및 데이터방송을 10분 이상 이용하지 못할 때, 사업자는 월 단위 구매(PPM)의 경우 장애 발생 시간을 일할 계산하여 월(월) 이용요금을, 시리즈 단위 구매(PPS), 편 당 구매(PPV)의 경우 해당 콘텐츠 이용 요금을 면제합니다.
- ③ 이용 장애 발생 시점은 이용자가 회사에 장애 신고한 시점 혹은 회사 먼저 장애를 인지한 시점을 0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되, 이용자가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1.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사업자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전시, 사변, 천재지변, 법령의 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
  3. 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서비스의 결함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순수 하였음에도 서비스 장애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4.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단말장치 등이 파손되어 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5. 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시스템 및 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이용자가 사전에 통지한 경우
- ⑤ 제1항의 손해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요금의 일평균금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이용자와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됩니다.
- ⑥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⑦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⑧ 사업자는 디지털 일정형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기준 아날로그 상품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24조(악관의 개정 및 기타)

- ① 사업자는 악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전 신고하고 본 악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사업자가 악관 내용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여 기존의 계약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 및 개정 내용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 해야 합니다.
- ③ 개정악관의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는 적용 일을 전후하여 각 7일 이상 전체 운영채널 중 1/2 이상 채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통지 또는 고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본 악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사업자는 결합 할인율을 변경하거나 결합상품을 폐지하는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해야하며, 이용자에게 우편, 이메일, 문자 등으로 개별 고지해야 합니다.
- ⑥ 사업자 책임있는 시유의 결합상품의 폐지의 경우, 기존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계속 제공합니다.
- ⑦ 사업자는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결합할인율 변경시,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고 있는 현재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의 변경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⑧ 이 악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부 례]

- ①(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3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 ③(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④(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⑤(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5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⑥(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⑦(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⑧(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5년 8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⑨(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⑩(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⑪(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⑫(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⑬(시행일) 이 악관은 2015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⑭(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 ⑮(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 ⑯(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⑰(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⑱(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7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⑲(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9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 ⑳(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㉑(시행일) 이 악관은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㉒(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㉓(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㉔(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㉕(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㉖(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㉗(경과조치) 신규채널 송출 및 채널번호 변경, 오픈채널 송출 중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중단은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㉘(시행일) 이 악관은 2017년 9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㉙(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㉚(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㉛(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1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㉜(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㉝(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㉞(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4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8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1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7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19년 8월 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
- 이용악관 본문 제11조(요금의 할인 및 감면 등), 제18조 (의무 가입기간 설정 및 위약금) ⑤항의 3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19년 9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5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6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유료채널 송출 중단은 202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5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8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악관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경과조치) 이 악관은 2023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NO	CH	채널명	종료일
1	532	EBS플러스2	20년 6월 26일
2	533	EBS러닝 초등3	20년 6월 2일
3	534	EBS러닝 초등4	20년 6월 2일
4	535	EBS러닝 초등5	20년 6월 5일
5	536	EBS러닝 초등6	20년 6월 5일
6	541	EBS러닝 중학1	20년 6월 5일
7	542	EBS러닝 중학2	20년 6월 2일
8	543	EBS잉글리쉬	20년 5월 26일
9	551	EBS플러스1	20년 6월 2일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0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 ㉟(시행일) 이 악관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1] 아날로그 케이블TV 요금표 (“2017. 8. 7. 이후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단”)

(부가세 포함)			
구 分	내 용	금 액	비 고
1. 개별수신료	묶음1(의무형) 수신료로 부당 묶음2(가족형) 수신료로 부당	월 4,400 원 이하 월 7,700 원 이하	
일시 선납사 계산방법	6개월 선납사 12개월 선납사	5 % 할인 10 % 할인	
2. 시설설치비	종합유선방송 수신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되는 재공사비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복수 수신 설치 이전비 채연결비, 막내이전비	44,000원 이내 66,000원 이내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33,000원 이하 22,000원 이하	

\* 아날로그 케이블TV요금은 수신료 변경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케이블TV 단체 공동과금 적용세대는 방송 결합시 방송요금을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적용)

\* 아날로그 서비스 전송 제외지역은 [별표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디지털알뜰형), 4. 디지털 알뜰형  
서비스 제공 지역 (아날로그서비스 전송 제외 지역)을 참고 바랍니다.

[별표 2] 아날로그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2017. 8. 7. 이후 아날로그 상품 판매 중단”)

구 分	■묶음1(의무형)		■묶음2(가족형)	
	채널수	20개 채널	59채널	■묶음1(20개)+39개
	NO	CH	채 널 명	채 널 명
			묶음1+	
	1	7	JTBC	2
	2	8	-자역채널-	4
	3	9	-TV조선-	5
	4	10	-현대홈쇼핑-	6
	5	11	-MBC-	24
	6	12	-CJ오쇼핑-	25
	7	13	-KNN-	26
	8	14	-GSshop-	29
	9	15	-KBS1-	33
	10	16	-롯데홈쇼핑-	35
	11	17	-KBS2-	37
	12	18	-NS홈쇼핑-	39
	13	19	-홈&쇼핑-	40
	14	20	-KBS드라마-	41
	15	21	-EBS-	45
	16	22	-채널A-	46
	17	23	-MBN-	50
	18	85	-한국정책방송	52
	19	86	-국회방송	53
	20	97	-방송대학	57
	21		58 -채널J	
	22		60 -SBS SPORTS	
	23		61 -KBSN스포츠	
	24		62 -MBCSPORTS+	
	25		72 -바둑TV	
	26		73 -FTV	
	27		77 -내셔널자오크래프	
	28		78 -사이언스TV	
	29		79 -아시아경제TV	
	30		80 -직업방송	
	31		82 -복지TV	
	32		87 -BTN불교tv	
	33		88 -카톨릭평화방송	
	34		89 -CTS 카독교TV	
	35		91 -어린이TV	
	36		92 -JTF제능TV	
	37		93 -투니버스	
	38		98 -EBS플러스1	
	39		99 -EBS플러스2	

수신료	월 4,400원 이하	월 7,700원 이하
-----	-------------	-------------

[별표 3] 종합유선방송 이용요금표 (디지털 알뜰형)

1. 채널상품수신료

(부가세 포함)

채널상품명	요금	비고
알뜰의무형	월 4,400원 이하	
알뜰가족형	월 7,700원 이하	

2. 설치공사비

구 분	요 금	비 고
단독주택	44,000원 이하	
공동주택	66,000원 이하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실제공사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
복수 수신설치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이전비	33,000원 이하	
재연결비 / 막내 이전비	22,000원 이하	

3. 컨버터요금(DtoA)

구 分	요 금	비 고
사용료	월 2,200원 이하	아날로그TV 보유 가입자 무상 제공
보증금	대당 33,000원 이하	

[별표 4]

디지털 알뜰형 케이블TV 채널상품 구성표

채널번호	■묶음1(알뜰의무형)			■묶음2(알뜰가족형)		
	채널수	21개 채널 (HD: 21)		91개 채널 ■묶음1(21개)+70개(HD: 70)	채널명	묶음1+
1	NO	CH	HD/SD	채널명	CH	HD/SD
2	7-1	HD	JTBC	1-1	HD	SBS플러스
3	8-1	HD	지역채널	2-1	HD	W쇼핑
4	9-1	HD	TV조선	3-1	HD	MBC Every1
5	10-1	HD	현대홈쇼핑	4-1	HD	쇼핑엔티
6	11-1	HD	MBC	5-1	HD	tvN
7	12-1	HD	CJ온스타일	6-1	HD	공영쇼핑
8	13-1	HD	KNN	20-1	HD	KBS Joy
9	14-1	HD	GS SHOP	24-1	HD	YTN
10	15-1	HD	KBS1	25-1	HD	연합뉴스TV
11	16-1	HD	롯데홈쇼핑	25-2	HD	한국경제TV
12	17-1	HD	KBS2	26-1	HD	MBC드라마넷
13	18-1	HD	NS홈쇼핑	27-1	HD	KT알파 쇼핑
14	19-1	HD	홈엔쇼핑	28-1	HD	SBS funE
15	20-1	HD	EBS1	29-1	HD	CJ온스타일플러스
16	21-2	HD	EBS2	30-1	HD	OCN
17	22-1	HD	채널A	31-1	HD	현대홈쇼핑+SHOP
18	23-1	HD	MBN	33-1	HD	SK스토어
19	24-1	HD	KBS드라마	34-1	HD	M.NET
20	25-1	HD	KTV	35-1	HD	tvN SHOW
21	26-1	HD	국회방송	36-1	HD	GS MY SHOP
22	27-1	HD	방송대학	37-1	HD	tvN DRAMA
23	28-1	HD		38-1	HD	엣지TV
24	29-1	HD		39-1	HD	iHQ drama
25	30-1	HD		40-1	HD	Lotte One TV
26	31-1	HD		41-1	HD	CNTV
27	32-1	HD		42-1	HD	신세계TV쇼핑
28	33-1	HD		43-1	HD	디원
29	34-1	HD		44-1	HD	CMCTV
30	35-1	HD		45-1	HD	NS Shop+
31	36-1	HD		46-1	HD	K STAR
32	37-1	HD		47-1	HD	I.NET
33	38-1	HD		48-1	HD	tvN Story
34	39-1	HD		49-1	HD	ENA
35	40-1	HD		50-1	HD	iHQ
36	41-1	HD		51-1	HD	OCN Movies2
37	42-1	HD		52-1	HD	OCN Movies
38	43-1	HD		53-1	HD	AXN
39	44-1	HD		55-1	HD	Mplex
40	45-1	HD		57-1	HD	채널징
41	46-1	HD		58-1	HD	SBS스포츠
42	47-1	HD		60-1	HD	KBS N 스포츠
43	48-1	HD		61-1	HD	MBC스포츠+
44	49-1	HD		62-1	HD	SPOTV
45	50-1	HD		64-1	HD	SPOTV2
46	51-1	HD		65-1	HD	JTBC GOLF&SPORTS
47	52-1	HD		66-1	HD	SBS글프
48	53-1	HD		68-1	HD	tvN SPORTS
49	54-1	HD		69-1	HD	OGN
50	55-1	HD		70-1	HD	바둑TV
51	56-1	HD		72-1	HD	FTV
52	57-1	HD		73-1	HD	마운틴TV
53	58-1	HD		74-1	HD	ONT
54	59-1	HD		75-1	HD	사이언스TV

55			79-1	HD	MTN 머니투데이방송
56			80-1	HD	직업방송
57			81-1	HD	소상공인시장tv
58			82-1	HD	복지TV
59			83-1	HD	FUN TV
60			87-1	HD	BTN불교TV
61			88-1	HD	가톨릭평화방송
62			89-1	HD	CTS기독교TV
63			90-1	HD	상생방송
64			91-1	HD	어린이TV
65			92-1	HD	JE재능TV
66			93-1	HD	튜니버스
67			94-1	HD	애니맥스
68			95-1	HD	카툰네트워크
69			98-1	HD	EBS플러스1
70			99-1	HD	EBS플러스2
수신료			월4,400원이하		월 7,700원이하

## [별표 5]

### 디지털 케이블 TV 요금표(부가세 포함)

구 분	내 용	금 액	비 고
1. 개별이용료	1) 디지털 실속형 이용료 2) 디지털 경제형 이용료 3) 디지털 고급형 이용료 4) UHD 패키지 5) 플러스 팩	월 13,200원 이하 월 17,600원 이하 월 22,000원 이하 월 5,500원 이하 월 3,300원 이하	디지털 셋탑박스 및 UHD 셋탑박스 사용료 별도
2. 복수이용료	◆ 추가 1대 이상 - 디지털 실속형 이용료 - 디지털 경제형 이용료 - 디지털 고급형 이용료 - VOD, 데이터방송, 음악방송	13,200원이하+(6,600원이하X추가대수) 17,600원이하+(8,800원이하X추가대수) 22,000원이하+(11,000원이하X추가대수) 할인없음	50% 할인 50% 할인 50% 할인
3. 디지털 및 UHD 셋탑박스 사용료	디지털 및 UHD 셋탑박스의 월 사용료 및 유지 보수비로써 매월 부담	대당 월 5,500원 이하	
4. 케이블 및 스마트카드 분실 및 훼손비	케이블카드 훼손 및 분실 스마트카드 훼손 및 분실	개당 44,000원 이하 개당 22,000원 이하	*환율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디지털 셋톱 박스 및 리모컨 분실, 훼손비	◆ 디지털 셋톱박스 분실 시 ◆ 디지털 셋톱박스 훼손 시 ◆ 리모컨 분실 및 훼손 시	셋톱박스 사양에 따라 실비 부담 셋톱박스 사양에 따라 실비 부담 11,000원 이하	
6. 시설 설치비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관공서, 비 주거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 등 ◆ 복수 이용 설치 ◆ 이전비 ◆ 재연결비, 막내 이전비 ◆ 유료출장 서비스비	44,000원 이하 66,000원 이하 실제 공사비  추가되는 실제공사비 33,000원 이하 22,000원 이하 11,000원 이하	종합유선방송 이용 설비 설치 작업에 소요된 제 공사비
7. 디지털 셋톱 박스 보증금	대여 디지털 셋톱박스의 반환·훼손·분실에 대한 보증금으로써 최초 가입 시 부담	대당 55,000원 이하	계약 해지 시 반환
8. 약정할인	◆ 약정할인 - 1년 가입 할인 - 2년 가입 할인 - 3년 가입 할인 - 4년 가입 할인	월 디지털 상품별 이용료의 20% 이하 월 디지털 상품별 이용료의 30% 이하 월 디지털 상품별 이용료의 40% 이하 월 디지털 상품별 이용료의 50% 이하 (1~4년 할인금액에서 백원 단위 절사)	
9. 위약금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약정에 의해 설정한 경우 [별표9] 위약금변상금규정 따름	활인금액 설치비할인 장비임대료 혜택	약정할인 정기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설치비 규정에 의거 할인받은 금액 장비임대료 정기 약정에 따른 할인금액 사은품 가입시 받은 사은품 금액



41	41	HD	CNTV	107	207	HD	매일경제TV	41	172	HD	엑스원
42	42	HD	신세계TV쇼핑	108	211	HD	NHK World Premium	42	210	SD	CCTV4
43	43	HD	디원	109	212	HD	아리랑TV	43	214	HD	BBC News
44	44	HD	MBC ON	110	213	HD	CNN	44	215	SD	CGTN
45	45	HD	NS Shop+	111	301	HD	EBS KIDS	45	300	HD	육아방송
46	46	HD	ENA DRAMA	112	305	HD	더키즈	46	304	HD	KBS키즈
47	48	HD	tvN Story	113	308	HD	JEI재능TV	47	315	HD	SBS Golf2
48	49	HD	ENA	114	309	HD	어린이TV	48	316	HD	애니원
49	50	HD	iHQ	115	310	HD	애니박스	49	317	HD	애니플러스
50	51	HD	K STAR	116	311	HD	카툰네트워크	50	325	HD	JEI잉글리쉬
51	52	HD	OCN Movies2	117	312	HD	투니버스	51	326	HD	플레이린TV
52	55	HD	OCN Thrills	118	313	HD	애니맥스				
53	56	HD	EBS2	119	314	HD	부메랑TV				
54	57	HD	홈초이스	120	321	HD	방송대학				
55	60	HD	Mplex	121	322	HD	EBS플러스1				
56	61	HD	THE MOVIE	122	323	HD	EBS플러스2				
57	62	HD	AXN	123	324	HD	EBS잉글리쉬				
58	66	HD	채널청	124	400	HD	BTN불교TV				
59	67	HD	중화TV	125	401	HD	BBS불교방송				
60	69	HD	채널J	126	402	HD	카톨릭평화방송				
61	79	HD	MBC M	127	403	HD	CTS기독교TV				
62	81	HD	CMCTV	128	404	HD	CBS기독교방송				
63	82	HD	복지TV	129	406	HD	상생방송				
64	83	HD	FUN TV								
65	84	HD	청춘시대TV								
66	86	HD	국회방송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개학과 개학 추가 연기에 따른 EBS 라이브 특강 채널이 한시적으로 추가 편성됩니다.

①채널 번호 : 532,533,534,535,536,541,542,543 (총 8개 채널)

②적용 시기 : '20.08.31. ~ '22.08.31.

### ③상세 내역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1	532	EBS플러스2	4	535	EBS러닝 초등5	7	542	EBS러닝 중학2
2	533	EBS러닝 초등3	5	536	EBS러닝 초등6	8	543	EBS잉글리쉬
3	534	EBS러닝 초등4	6	541	EBS러닝 중학1			

\*EBS플러스2(기준 323번)의 경우 초등 1~2학년, EBS잉글리쉬(기준 324번)의 경우 중등 3학년의 특강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으며, 해당 2개 채널은 기존 채널번호에서도 동일하게 시청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시기동안 한시적으로 HD화질이 송출됩니다.

### ■ 홍보채널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1	65	홍보채널	5	237	홍보채널	9	407	홍보채널
2	71	홍보채널	6	280	홍보채널			
3	92	홍보채널	7	281	홍보채널			
4	230	홍보채널	8	282	홍보채널			

### ■ 유료채널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1	53	캐치온	5	111	SPOTV Prime	9	235	VIKI
2	54	캐치온2	6	231	도그TV	10	236	허니TV
3	109	SPOTV ON	7	233	플레이보이	11	302	신기한나라TV
4	110	SPOTV ON 2	8	234	미드나잇			

### ■ 데이터방송

구분	데이터 채널		
채널수	5개 채널		
No	채널번호	채널명	장르
1	901	GS SHOP 쇼핑	
2	902	아하 경제TV	
3	910	만화	
4	914	키즈OLO	
5	920	노래방	

### ■ UHD 패키지

NO	CH	채널명
1	220	UMAX
2	221	UXN
3	222	SBS FIL UHD

### ■ 플러스 팩 (HD : 25)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1	65	월드클래식무비	11	146	뉴트로TV	21	253	생활체육TV
2	71	채널액션	12	147	컬쳐플러스	22	254	BallTV
3	72	인디필름	13	148	아이넷라이프	23	255	RNA
4	92	디스커버리	14	166	다문화TV	24	256	아프리카TV
5	97	채널이엔	15	167	KBS Life	25	405	GoodTV
6	98	TV조선3	16	168	하비라이프			
7	139	드라마큐브	17	169	리빙TV			
8	140	채널유	18	250	시네마천국			
9	144	국악방송	19	251	SBS FIL			
10	145	Ent.TV	20	252	StoryTV			

■ 약정형 유료상품

구분		약정기간별 할인율		
		1년	2년	3년
유료채널	캐치온1, 캐치온2, 허니TV, 비키TV, 미드나잇, 플레이보이, 신기한나라TV	10%	30%	50%
PPM	무비IN시리즈, 키즈무제한, 에로틱초이스	20%	30%	40%

구분		약정기간별 할인율		
		3개월	6개월	1년
유료채널	SPOTV ON, SPOTV ON 2	5%	10%	20%
PPM	무비IN시리즈, 청춘시대, JTBC, TV조선, 채널A, MBN	5%	10%	20%
	딜라이트	20%	30%	40%
	CJ ENM	-	-	20%

\* 캐치온1, 캐치온2, 미드나잇, 플레이보이, 신기한나라TV 상품의 경우, VOD단독판매가 불가하여 온디맨드 상품과 결합판매 됩니다.

(캐치온 온디맨드 : 2,420원 / 미드나잇 온디맨드 : 2,640원 / 플레이보이 온디맨드 : 2,640원 / 신기한나라TV 온디맨드 : 2,640원)

\* SPOTV ON, SPOTV ON 2 : 2021년 7월 26일부터 약정상품 판매종료(기준 기입된 고객은 약정종료시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 약정 계약기간 이내 해지시 [별표9]의 '기본이용료' 산정식에 근거하여 할인 요금을 반환함

(산정식 : '약정할인금 x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

[별표 7]

방송요금 할인

1. 할인대상 및 할인율

대상	적용기준	감면율 (기본이용료)	증빙서류	
자연인	성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30%	각 대상 분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中 제2호(애국지사), 4호(전상군경), 제6호(공상군경), 제12호(4.19혁명부상자), 제15호(공상공무원), 제 17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제73조(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 생활조정수당지급 대상자인 국가유공자.	30%	
	저소득층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생활보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 관청이 인정하는 본인 및 직계가족 1인 및 차상위 계층 지정 가구.	30%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및 유족	30%	
	광주 민주화 상이자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30%	
	3자녀 가정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두 부모 및 직계자녀 명의로 신청한 회선(단, 가정용에 한함)	30%	
	참전용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658호에 근거하여 보훈청으로부터 참전 용사증을 발급받은 참전용사	30%	
	만 65세 이상 가구주	가구주와 명의인 동일시.	30%	
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복지단체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에 근거하여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복지시설 및 단체	30%	행정기관 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고등교육법에서 지정한 특수학교	30%	
	아동복지법에의한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아동복지시설	30%	
	국가유공자 단체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에 속한 단체	30%	

\* 증빙서류는 FAX, 전자우편(E-mail), 우편, 방문접수 등으로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전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 안전행정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요금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감면 자격 확인을 위한 본인정보활용 등의 시 해당 증빙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합니다.

①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최고 감면율 대상 1항목만 적용합니다.

② 1인 1회선에 대하여 감면 적용합니다.

③ 유료 정보 서비스 이용료 및 유료 부가서비스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④ 사무용서비스, 특수사무용서비스(PC방), 교육용서비스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⑤ 요금감면 대상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타 할인과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⑦ 별표7의 방송요금 할인에 대한 경우, 별도의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2. 이용료 감면 이벤트

①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민원 발생시 기본 이용료를 최대 4개월 면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신규 진입지역(아파트) 개통의 경우는 최대 4개월까지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별표 9]

### 할인반환금 및 변상금

#### ① 할인반환금의 정의

- 이용고객이 사용기간을 사전 약정하고 기본이용료, 장치임대료, 설치비 등에 대해서 할인 또는 면제를 받던 중 약정 기간 만료 전에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거나, 약정기간을 단축시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것을 할인반환금이라고 합니다. 단, 설치비는 이용고객이 1년 이전에 해지하였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② 산정 기준

종류	산정식	비고
2016년 12월31일 이전가입자	기본이용료 (사용기간 이용요금 - 약정기간 이용요금) × 이용개월수	
	장치임대료 (사용기간 임대료 - 약정기간 임대료) × 이용개월수	
2017년 1월1일 이후가입자	기본이용료 '약정할인금 ×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장치임대료 '약정할인금 × 약정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의 월 누적금액	
설치비	면제된 가입설치비 (단, 1년이상 사용시 면제)	
이용 요금 면제 반환금	(실 면제개월수 - 사용기간 면제 개월 수) × 약정이용요금 * 사용기간 할인율 적용 : 1년 미만시 무약정 실면제개월수, 2년 미만시 1년약정 실면제개월수, 3년 미만시 2년약정 실면제개월수, 4년 미만시 3년약정 실면제개월수로 적용한다.	
재계약 후 종도해지	사용기간 월 이용료 × 재약정 이용개월수 × (재약정기간 할인율-이용기간 할인율)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해지시 위약금	이용개월수 × 결합 할인액 → 일부서비스 해지시 위약금은 기존 결합상품으로 부터의 혜택과 일부 서비스 해지후 변경 결합상품간의 혜택차이로 산정	
약정기간 단축	(변경후 약정이용료-최초약정이용료) × 사용개월 수 × (1-사용개월 전월수 /100)	임대료 반환금과 동일함

\* 사용기간 산정(16년12월31일이전가입자): 1년 미만, 무약정, 2년미만 1년약정, 3년미만은 2년약정, 4년미만은 3년약정으로 적용합니다.

\* 이용 개월 수를 계산 할 때 있어 30일 미만의 기간은 1개월을 30일로 하여 일활 계산 합니다.

\* 재 약정기간 만료 후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약정기간은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 자동 연장기간 중 이용 요금은 재 약정기간 요금을 적용합니다. 단, 자동연장 후 종도 해지시 할인액 반환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 약정 별 할인액 반환금 부과율

#### ① 1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9	10~12
부과율(%)	100	80	-20

#### ② 2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5	16~18	19~21	22~24
부과율(%)	100	40	20	-50	-80	-100

#### ③ 3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8	19~24	25~30	31~36
부과율(%)	100	60	30	-20	-50	-80

#### ④ 4년 약정

사용기간(개월)	1~6	7~12	13~18	19~24	25~28	29~32
부과율(%)	100	60	40	20	0	-5
사용기간(개월)	33~35	36~38	39~41	42~43	44~45	46~48
부과율(%)	-20	-40	-70	-100	-140	-160

※ 약정이용 기간별 할인반환금 부과율 기준 (2017년 1월1일 이후 기입자 적용)

예시) 3년 약정 기준 28개월 사용시.

: (6개월x할인금액x100%)+(6개월x할인금액x60%)+(6개월x할인금액x30%)+(6개월x할인금액x-20%)+(4개월x할인금액x-50%)

#### ③ 장비 변상금 및 A/S 수리비

##### 1. 변상금 산정식

종류		산정식
2017년 5월 31일 이전가입자	장비 변상금	(60개월-사용월수*)/60개월 X 장비가격(셋톱박스, 컨버터 판매가격) *사용월수 : 현 단말 이용자에게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2017년 6월 1일 이후가입자	장비 변상금	(60개월-해당 단말의 사용월수**) / 60개월 X 장비가격(셋톱박스, 컨버터 판매가격) **해당 단말의 사용월수 : 단말이 실제 개통되어 사용된 기간

- 장비가격은 분실, 훼손 당시의 시가를 의미하며, 시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동일규격 셋톱박스(또는 컨버터)가격입니다.

- 사용월수는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로 계산합니다.

- 사용월수는 15일에서 반올림합니다.

2. A/S수리비 :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장비 손상시에는 회사가 정한 A/S 규정에 따라 수리하며, 그 비용을 이용고객에게 유상으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은 장비 수리 시 발생한 실비로 합니다.

[별표 10]

## 디지털 복지형 상품

## 1. 채널 구성 및 수신료

■ 디지털 복지형						
구 분	채널수 20개 채널					
	NO	CH	채널명	NO	CH	채널명
채 널 편 성	1	5	KBS드라마	11	11	NS홈쇼핑
	2	6	현대홈쇼핑	12	11-1	MBC
	3	6-1	SBS/KNN	13	12	홈&쇼핑
	4	7	GS오쇼핑	14	15	JTBC
	5	7-1	KBS	15	16	MBN
	6	8	SCS(지역채널)	16	17	채널A
	7	9	롯데홈쇼핑	17	19	TV조선
	8	9-1	KBS1	18	95	국회방송
	9	10	CJ오쇼핑	19	96	한국정책방송
	10	10-1	EBS	20	97	방송대학

  

수신료	월4,400원이하
-----	-----------

\* <별표5의 방송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객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 이 경우에 다른 할인과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2. 가입 대상

디지털 '복지형' 상품의 가입 대상은 한국전파진흥협회 '저소득층 디지털TV 보급 지원센터'의 저소득층 확인 절차를 거쳐 보급형 디지털TV를 구매한 가구로 합니다.

세 부 자 격	
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가구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 제2호의2 ·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수신료가 면제되는 수상기로 소지한 가구
차상위계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자</li> <li>.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li> <li>.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li> <li>.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30 이하인 자를 포함</li> <li>.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부가급여를 지급받는 자</li> <li>.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자자체에서 확인받은 자의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li> </ul>

\* '디지털복지형' 상품은 사업자가 송출하는 디지털 방송신호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업자는 동 서비스 이용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아날로그 방송의 중단, 품질저하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표 11]

## 구비서류

## 1. 개인

구 분	구비 서류		비 고
	본인	대리인	
개인	가입신청서, 본인 신분증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외국인	일반, 외교관, 주한 미군 등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등록증, 여권, 외교관신분증, 주둔명령서, 주한미군ID카드 종 1	가입신청서, 대리인신분증 및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교관신분증, 주한미군ID카드 종 1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종 1	대리인신분증 및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종 1
미성년자	가입신청서, 본인신분증, 미성년자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 법정대리인의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신분증, 법정대리인입증서류(주민 등록등본, 호적등본 등)	가입신청서, 명의인신분증, 법정대리인 내방증명서(서명날인), 위임장, 인감 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신분증	18세이상 미성년자 대학생 또는 직장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증명서류 제출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외

## 2.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 分	구비서류		비 고
	본인(대표자)	대리인	
개인사업자	가입신청서,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가입신청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상장/비상장/공공법인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입신청서,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대리인신분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		
미군부대	가입신청서, 공문서, 부대장ID카드, 대리인신분증(ID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단, 구운전면허증은 제외)

\* 위임장/인감증명서: 신청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명의인(대표자)에게 전화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이용 신청 위임 여부를 확인하면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또는 인감) 면제 가능

### 3. 할인액반환금 100% 및 50% 감면 대상

구분	면제사유	구비서류
할인반환금 100%감면	가입자 군입대	병적증명서, 입영사실확인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입영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입영일자/결과조회(병무청사이트에서 이용가능) 서류 종 택1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서비스제공 불가능지역 이전 사업자	-사업자 이전 시 : 3개월 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마이전시 : 부동산계약서(필수)+단사회선개통확인서, 가입고객 명의의 단사회선 요금고지서, 이전설치 주소지역의 가입고객 명의의 세금고지서종 택1
		가입자 사망
	해외이민	해외 이민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 ※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 상에 신고인이 아닌 동반자로 되어 있을 시, 가족관계증빙서류 필수, 외교통상부 장관(인) 필수
할인반환금 50%감면	건물주 반대 일반고객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주소가 나와 있는 사업자등록증(해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주소/소재지 변경일이 해지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하단에 날짜로 확인)
	사업자	전입 3개월 내 발행한 주민등록등본(필수) (단, 미전입시 : 전월세계약서+이전 설치 주소지역의 가입자명의 공과금 요금고지서) 할인반환금 면제(100%)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22년 4월 1일 이후 이전 설치 요청 건에 대한 해당사항) ※ 가입자명의 서류여야 함

\* 구비서류 변조 등 부적절한 서류에 의해 할인반환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감면한 할인반환금을 재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건물주 반대 사유로 설치 불가 확인된 고객에 한해 구비서류 접수 후 감면 적용합니다.

### 4. 이용약관 본문 제11조 ①항의 이용료 할인대상

('22년 3월 31일까지의 이전 설치 요청 건에 대한 해당사항)

구비서류	비고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필수)	- 사업자가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 및 검증 한 이후 적용 - 이전사업자를 통해 발행된 할인반환금 납부확인서 종사업자에 신규로 가입한 서비스에 한하여 "이용자 납부액"에 이를 때 까지 매월 이용료(부가사용료 제외)에서 할인

[별표 12] 신규 가입 제한 서비스 2014년 1. 1일부터 신규가입 제한 (부가세 포함)

#### (1) 케이블모뎀

구분	무약정	1년약정	2년약정	3년약정	4년약정	비고
아날로그 DPS (콤보)	콤보 프로	29,700	27,500	25,300	24,200	23,100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계	35,200	33,000	30,800	29,700	28,600
	콤보 스마트	25,300	23,100	20,900	19,800	18,700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계	30,800	28,600	26,400	25,300	24,200
	콤보 라이트	24,200	22,000	19,800	18,700	-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디지털 DPS (디콤보)	디콤보 프로	29,700	27,500	25,300	24,200	23,1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계	45,100	40,700	36,300	33,000	30,800
	디콤보 스마트	25,300	23,100	20,900	19,800	18,7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계	49,500	45,100	40,700	37,400	35,200
인터넷 DPS (전화)	디콤보 라이트	24,200	22,000	19,800	18,700	-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
	계	39,600	35,200	30,800	27,500	-
	디콤보 고급형	45,100	40,700	36,300	33,000	30,8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
	계	44,000	39,600	35,200	31,900	-
인터넷 DPS (전화)	프로	31,900	29,700	27,500	26,400	25,300
	스마트	27,500	25,300	23,100	22,000	20,900
	라이트	26,400	24,200	22,000	20,900	-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프로	34,100	31,900	29,700	28,600	27,500
	스마트	29,700	27,500	25,300	24,200	23,100
	라이트	28,600	26,400	24,200	23,100	-
	계	34,100	31,900	29,700	28,600	27,500
아날로그 TPS (콤보 셋트)	콤보 프로셋트	29,700	27,500	25,300	24,200	23,100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계	37,400	35,200	33,000	31,900	30,800
	콤보 스마트셋트	25,300	23,100	20,900	19,800	18,700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계	33,000	30,800	28,600	27,500	26,400
디지털 TPS (디콤보 셋트)	콤보 라이트셋트	24,200	22,000	19,800	18,700	-
	방송 가족형	5,500	5,500	5,500	5,500	5,5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계	31,900	29,700	27,500	26,400	-
	디콤보 프로셋트	29,700	27,500	25,300	24,200	23,1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디지털 TPS (디콤보 셋트)	계	47,300	42,900	38,500	35,200	33,000
	디콤보 고급형	51,700	47,300	42,900	39,600	37,4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계	42,900	38,500	34,100	30,800	28,600
	디콤보 고급형	47,300	42,900	38,500	35,200	33,000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7,700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12,100
디지털 TPS (디콤보 셋트)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2,200
	계	41,800	37,400	33,000	29,700	-
	디콤보 고급형	46,200	41,800	37,400	34,100	-
	방송 경제형	15,400	13,200	11,000	8,800	-
	고급형	19,800	17,600	15,400	13,200	-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
	계	41,800	37,400	33,000	29,700	-
	디콤보 고급형	46,200	41,800	37,400	34,100	-



(4) 셋탑 + 인터넷

구분		무약정 (5%)	1년약정 (10%)	2년약정 (15%)	3년약정 (20%)	4년약정 (30%)	비고
디지털 DPS (디콤보)	디콤보 스피드	35,530	27,720	23,375	20,240	16,170	
	방송	실속형	12,540	9,900	7,480	6,160	
		경제형	16,720	13,860	11,220	8,800	
		고급형	20,900	17,820	14,960	12,320	
	계	실속형	48,070	37,820	30,855	26,400	
		경제형	52,250	41,580	34,595	29,040	
		고급형	56,430	45,540	38,335	32,560	
디지털 TPS (디콤보 셋트)	디콤보 스피드	35,530	27,720	23,375	20,240	16,170	약정 별 차등할인
	방송	실속형	12,540	9,900	7,480	6,160	
		경제형	16,720	13,860	11,220	8,800	
		고급형	20,900	17,820	14,960	12,320	
	전화 (기본료)		2,200	2,200	2,200	2,200	
		실속형	50,270	39,820	33,055	28,600	
		경제형	54,450	43,780	36,795	31,240	
	고급형	58,630	47,740	40,535	34,760	28,380	

\* 본상품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의 결합상품 가입자에 해당 되며, 2014년 1월 1일(약관승인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이 제한된 상품입니다.

\* 아날로그 케이블TV요금은 수신료 변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단, 케이블TV 단체 공동과금 적용세대는 방송 결합시 방송요금을 인터넷 요금에서 할인 적용)

\* 고객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다른 상품으로의 변경 요청 하는 경우 상품변경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신규 가입 한 것으로 합니다.

\* 동일 번지 내 디콤보 상품 추가 가입시 복수 가입 할인율에 의해 디지털 방송만 할인 적용됩니다.